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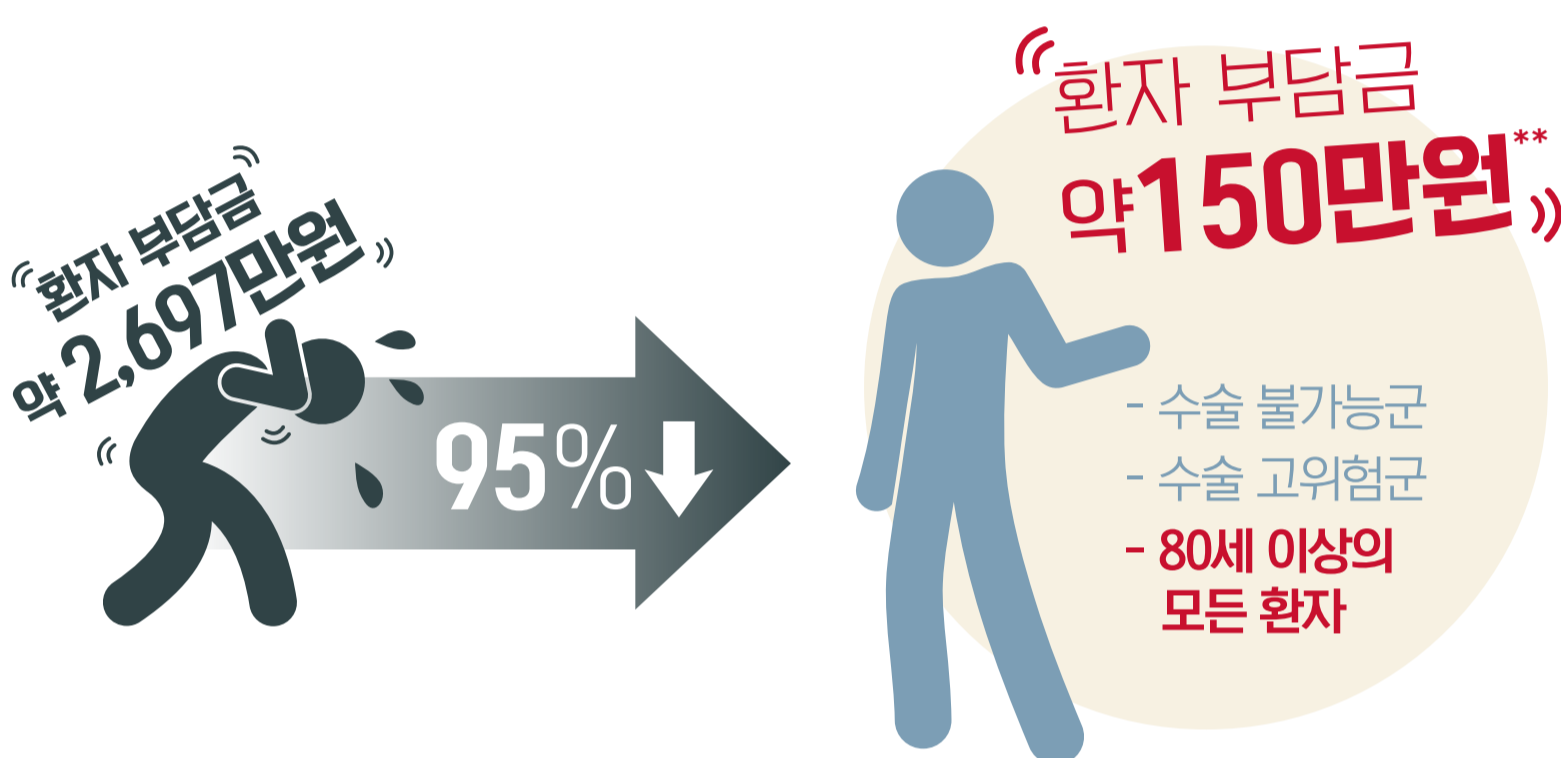
# 대동맥판막 협착증 치료를 위한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, 비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낮아졌습니다

## 대동맥판막 협착증, 인공판막을 교체하는 수술 혹은 시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.<sup>1</sup>

가슴을 열어 좁아진 판막을 인공판막으로 교체하는 수술적 치료와  
가슴을 열지 않고 몸 속으로 기다란 관을 삽입해 인공판막을 위치시키는  
시술적 치료가 있습니다.

## 2022년 5월 1일부터, 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낮아졌습니다!

80세 이상의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라면  
최대 95% 낮아진 비용으로  
경피적 대동맥판막 삽입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.<sup>2</sup>



절대적 금기증\*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  
중 아래 가운데 **하나** 이상 해당되는  
환자

- 수술 불가능군
- 수술 고위험군
- **80세 이상의 모든 환자**

급여 (중증질환자 산정특례  
적용 받아 **본인부담률 5%**)

환자 부담금: 약 150만원\*\*

수술 중위험군

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%

수술 저위험군

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%

\*절대적 금기증 해당 여부 및 보험 적용 요건은 담당 의료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.  
\*\*환자 부담금은 해당 수술/처치 관련 직접 행위수가와 치료재료 비용만을 합한 금액입니다.

## 비봉합 대동맥판막 치환술 역시 5월 1일부터 급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!

증상이 있는 대동맥판막 협착증 및 대동맥판막폐쇄부전 환자에서  
수술적 방법으로 대동맥판막을 교체하되 인공판막을 봉합하지 않거나  
**최소한의 봉합(3회)으로 고정하는 행위**로,  
심장수술 이력이 있는 환자를 포함하여 급여기준에 부합한 환자는  
**5%만 본인 부담**(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적용받아 약 76만원 수준),  
이외 선별급여 50%를 적용합니다.<sup>2</sup>

아래 급여 기준 가운데 **하나** 이상 부합 하는  
환자

급여 (**본인부담률 5%**)

- 심장수술 이력이 있는 환자
- 대동맥판막 수술 외의 심장 수술 병행하는 환자
- 석회화로 겹자나 봉합사 사용 불가한 환자
- 직경 21 mm 이하의 대동맥판막륜을 가진 환자
- 좌심실 구혈률 및 수술 위험도가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

환자 부담금: 약 76만원\*\*

이외(담당의와 상의 필요)

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%

\*\*환자 부담금은 해당 수술/처치 관련 직접 행위수가와 치료재료 비용만을 합한 금액입니다.

치료 시기가 중요한  
대동맥판막 협착증,  
뉴스레터 구독하고  
더욱 자세한 정보를 받아보세요!



본 자료는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

### References

1. 질병관리청. 국가건강정보포털: 건강정보>심장 판막 질환[Accessed 19 April 2022]. Available from: <https://health.kdca.go.kr/healthinfo/biz/health/gnrlzHealthInfo/gnrlzHealthInfo/gnrlzHealthInfoView.do>; 2. 보건복지부. **홍>알림>** 보도자료: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(3.31) [Accessed 19 April 2022]. Available from: [http://www.mohw.go.kr/react/al/sal0301vw.jsp?PAR\\_MENU\\_ID=04&MENU\\_ID=0403&page=3&CONT\\_SEQ=370895](http://www.mohw.go.kr/react/al/sal0301vw.jsp?PAR_MENU_ID=04&MENU_ID=0403&page=3&CONT_SEQ=370895)